

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문

수급자 어르신의 존엄한 삶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합니다.

1. 연명의료결정제도란 무엇인가요? (제도 목적)

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,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어르신 스스로 마지막 의료 처치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.

2.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- **정의:** 향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, 연명의료(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 등)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두는 제도입니다.
- **작성 대상:**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3. 어디서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 및 등록기관)

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받은 후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
- **주요 등록기관:** 지역 보건소,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, 지정 의료기관(병원), 지정 비영리법인 등.
- **준비물:**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필수 지참.

4. 더 궁금한 내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- **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:**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담 상담 및 정보 제공.
- **홈페이지:** <https://lst.go.kr>.
- **안내 전화:** 1855-0075

안내일자: 2026년 01 월 02 일

안 내 자: 최고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이순영(서명)

기 관 명: 최고재가장기요양기관

대 표 자: 이 정 신 (직인)

